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1,885,367	15,356,561
일반회계	501,076,335	15,032,290
특별회계	10,809,032	324,271
기타특별회계	10,809,032	324,27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299,550	68,987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57,240	25,717
건축진흥특별회계	177,720	5,332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03,790	3,114
상수도특별회계	5,998,176	179,945
수질개선특별회계	109,000	3,27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640,826	19,2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2,730	18,68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164,77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